

강원도립대학교 학교기업운영세칙

(제정) 2004-06-25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강원도립대학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.)에서 위임받은 강원도립대학교 학교기업(이하 “학교기업”이라 한다.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학교기업 설치) ①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설치·운영에관한규정(대통령령 제18327호)에 명시된 사항을 준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의 인적,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술, 자금, 판로, 시설 등을 지원한다.

제3조(사업의 범위)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학생 현장실습교육 개발·운영
2.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
3. 물품의 제조·가공·수선·판매 및 용역의 제공
4. 대학의 발전 지원

제4조(운영조직)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총장이 된다.

② 학교기업에는 사업의 기획과 실무를 총괄하는 경영이사와 1인 이상의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.

③ 경영이사는 외부에서 초빙하거나 학교기업 연계학과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경영이사실 하부조직으로 총무기획팀, 연구생산팀, 마케팅팀을 둔다.

제5조(회계) ① 학교기업의 사업연도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② 학교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정을 관리한다.

③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, 지자체, 대학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물품판매, 용역제공, 기술이전 등에 의한 수입금
3.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 등

④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
2. 학생 현장실습경비
3. 시설의 신축 및 기자재 구입비
4. 시설 및 장비 유지·보수비용
5. 대학의 시설·운영지원비

6. 수익 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7. 기타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한 비용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경영이사,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경영이사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영이사로 한다.

③ 위원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기업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 운영세칙 개정(안), 예산편성(안)에 관한 사항
3. 제3조 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의 기획,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
4. 수익발생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현장실습)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는 총 20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.

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은 1개 학기당 32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. 이 외의 현장실습기간별 학점 인정기준은 강원전문대학 산업체 현장실습시 규정에 의한다.

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보상금 지급) ① 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이익의 60% 범위내에서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20%를 넘을 수 없다.

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금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.

④ 제1항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권리로 발생한 매출액의 5%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